

건의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

2015. 04

대한상공회의소

1. 현황

- '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지방세법 '14년 1/1 개정·시행)
 - 과세표준은 국세(법인세·소득세)와 공유하되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
 - ※ 과세표준(지방세법 103조의 19)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 ※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 20)
 -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2.2%
 - '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운영 가능
 - ※ 세액공제·감면(지방세법 제103조의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특정 지역 개발 등을 위해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세액공제·감면 가능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액공제·감면 제도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변경 내용 >

(종전)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율 (10 22%)	=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국세)	=	법인세 총부담세액	×	10%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지방 소득세율 (1~2.2%)	=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지방세)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려는 취지(법률 제12153호 개정이유)
 - 국세 정책(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세수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226개)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
 -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함(지방세법 제103조의 2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국세청이 결정·경정한 자료에 의하거나 독자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대한 실지조사 가능(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5)

2. 문제점

-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부담 증가 및 국가 행정 혼란 초래 우려
 - 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불복과정(필요시)까지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
 - 특히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수차례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로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경정을 할 경우 납세자 및 국가행정 혼란 초래
 - 처분청별 세무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세액 확정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늘리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비율(국세)은 감소 추세

< 기업 세무조사 비율, % >

구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개인	0.65	0.26	0.34	0.21	0.18	0.11	0.10	0.12
법인	2.49	1.83	1.86	1.72	1.54	0.76	1.0	0.91

* 자료: e나라지표

- 현정부는 세정에 대한 불편과 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 현정부의 세정 부담 해소 정책(국세청) >

▶ 국세행정 개혁 추진('14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의 부과·징수는 비록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국민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숨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한상의·국세청,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 ✓ 해명과제 요구 및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현장 조사기간 단축 등 선정된 개선과제를 역점 추진 중
▶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정지원방안('1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만 개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배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따른 사업애로 업종,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 등
▶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납세불편 해소 등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과정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법인 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기로 한 취지 퇴색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기업이 별개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등 신고 부담 증가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과정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기업 부담 완화 효과 상실
- ※ 대한상의, '기업부담지수'(BBI) 조사 결과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포함한 '행정조사'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15년 1월)

- 국세와 공유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정부 세무조사 규정은 글로벌 입법 현황과 괴리된 것으로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 OECD 34개국 중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8개국
 - ※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국(OECD Tax Database):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 일본, 캐나다 등 국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경우 지방정부가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하지 않음
 - ※ 미국은 주정부별 독자적 입법을 통해 주마다 상이한 과세표준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법인세 하나의 세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공동세 제도를 운영
 - (일본) 법인세(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법인사업세 소득할(지방세)의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에 따라 법인사업세 소득할을 결정·경정
 -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과 주정부 간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 법인소득세와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주정부 법인소득세 징수 및 행정절차 전반(세무조사 포함)을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운영
 - ※ 다만 13개의 주(준주 포함) 중 켐백주, 앨버타주는 연방정부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 소득세제를 독립적으로 운영

3. 일본 사례

□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국세)와 법인사업세 소득할(지방세) 과세

- ※ 그 외 지방법인세·지방법인특별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등은 법인 세액·법인사업세액의 부가방식으로 운영
- ※ 법인사업세 구조
 -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소득, 자본금, 부가가치액, 수입 등으로 차등 구성
 - 가령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보통법인의 경우 소득/자본금/부가가치액 3개의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곱한 소득할액/자본할액/부가가치할액의 합계가 법인사업세액임

법인 구분	과세 표준
자본금 1억엔 초과 보통법인	부가가치액
	자본금 등
	소득
자본금 1억엔 이하 보통법인, 공익법인, 특별법인(의료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소득
전기·가스공급업, 보험업 영위 법인	수입금액

□ 법인사업세 소득할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 (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 23)

- 다만 연결신고법인, 의료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
- 연결신고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연결소득에 관계된 해당 연결 신고 법인의 개별 소득금액으로 계산
- ※ 연결소득금액(법인세 과세표준): 연결법인들의 개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된 법인간의 거래를 소거한 후에 산정
- 의료법인,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법인세와 법인사업세 소득할 간 의금, 손금 등의 범위가 다름

- 지방정부는 법인사업세 소득할 무신고, 신고오류 등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법인이 신고하거나 중앙정부가 결정·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세 소득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함(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 39)
 - 다만 연결신고법인 등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사업세 소득할 과세표준이 차이가 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방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사업세 소득할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 41)
 - 연결신고법인, 의료법인,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 등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게 법인세 결정·경정에 대한 청구 가능(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 40)
 - 지방정부는 법인사업세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대해 중앙정부(세무관서)에게 법인세의 결정·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 (법인사업세 무신고)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고, 법인사업세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법인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법인사업세 소득할 과세표준 과소신고) 법인사업세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법인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세무관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세무관서를 감독하는 세무관서에 법인세 결정·경정 청구 가능

4. 경제계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기업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 행정비용 부담 간 조화가 필요
 -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은 필요
 - 다만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실익(탈세 방지)보다 높은 비용(조사과정부터 불복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간 및 인력 소요 등)이 수반되는 비효율적 정책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근거해 결정·경정하도록 제도 개선
 - 다만 과세표준 외 세액공제·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세액공제·감면 등)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의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 지방세법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개정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세입확보 지원
 -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지방세법상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결정·경정의 청구' 조항 신설

※ 참고: 일본 지방세법 관련 조문

□ 지방세법 제72조의 39(법인세의 경정, 결정 등에 관계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소득할의 경정 및 결정)

- ① 도부현지사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제72조의 4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신고 또는 수정신고상 소득할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당해 법인의 당해 소득할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업연도상 법인세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및 결정에서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득할 과세표준인 소득(이하 이 항에서 “소득할 기준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소득할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당해 신고 또는 수정신고상 소득할의 계산의 기초가 된 소득 및 소득할액을 경정하고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할액의 산정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소득할액을 경정한다.
- ② 도부현지사는 전항의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72조의 2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상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할상 소득 및 소득할액을 결정한다.
- ③ 도부현지사는 전 항들 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당해 소득할상 소득 및 소득할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한 경우로서, 법인세상 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있음에 따라 당해 경정 또는 결정의 기준이 된 당해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당해 증가 또는 감소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할상 소득 및 소득할액을 경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한 소득할액의 산정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소득할액을 경정한다.

□ 지방세법 제72조의 40(세무관서에 대한 경정 또는 결정의 청구)

- ① 도부현지사는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세무관서(이하 “세무관서”라고 한다)에 대해 법인세에 관계되는 경정 또는 결정을 할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경정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해 세무관서가 당해 경정 또는 결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 또는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도부현지사는 당해 세무관서를 감독하는 세무관서에 경정 또는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72조의 39 제1항의 법인이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관계되는 소득이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당해 소득할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업연도에 관계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당해 신고서의 제출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날(제13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법인세에 관계되는 경정 또는 결정이 행해지지 않은 때
 2. 제72조의 39 제1항의 법인이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72조의 2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소득할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업연도에 관계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74조(동법 제1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이에 관계되는 기한후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소득할에 관계되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제13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법인세에 관계되는 결정이 행해지지 않은 때
 3. 도부현지사가 제72조의 39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법인의 소득할에 관계되는 소득 또는 소득할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관계되는 소득이 과소하다고 인정

되는 법인의 소득할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업연도에 관계되는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당해법인의 소득할에 관계되는 소득 또는 소득할액의 경정 또는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제13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법인세에 관계되는 경정이 행해지지 않은 때

② 2 이상의 도부현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관계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에 대해 해야 할 경정 또는 결정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도부현지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지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경영책임자가 주가 되어 집무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도부현지사) 또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도부현지사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72조의 41(도부현지사의 조사에 따른 소득할등의 경정 또는 결정)

- ① 도부현지사는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또는 보험업을 행하는 법인, 연결신고법인, 제72조의 23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제72조의 2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 또는 사업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병행하여 행하는 법인이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관계된 수입금액이나 소득 또는 수입할액이나 소득할액이 조사한 바와 다른 때에는 그것을 경정한다.
- ② 도부현지사는, 전항의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74조의 2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조사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소득 및 수입할액 또는 소득할액을 결정한다.

- ③ 도부현지사는 제1항 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수입금액 및 소득 또는 수입할액 또는 소득할액에 대해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조사에 의해 이를 경정한다.
- ④ 제1항의 법인이 제72조의 25, 제72조의 28 또는 제72조의 29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될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사실을 가장하여 경리한 바에 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후의 각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 있어 당해 사실에 관계되는 수정을 경리하고, 당해 결산에 기한 신고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에는 경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